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
----------	-----

2014년 12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4년 10월 28일
- 나. 발 의 자 : 남재경의원 외 11명
-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03일
- 라.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12월 4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재경의원)

### 가. 제안이유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형태지만 그 보존과 관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한옥을 잘 보존하고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소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한옥밀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사항 아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2014년 10월 28일 남재경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대부분 목조로 건축된 한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소 확대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한옥의 보존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안 취지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그 주요내용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제4조)함과 동시에 한옥밀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제6조)함.

#### ■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중 제1호와 관련하여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호와 관련하여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의3에 따른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호 중 제2조의

2와 안 제3호 중 제2조의3은 인용과정에서 단순 표기오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각각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로 제2조의3을 제2조제3호로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의무지정(안 제4조)**

-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이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따른 서울시내 한옥밀집지역은 인사동, 북촌, 경복궁서측, 돈화문로, 윤현궁 일대에 해당함.([표 1] 참조)

[표 1] 서울시내 한옥밀집지역 중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한옥밀집지역	인사동 (화재경계지구)	북촌 (화재경계지구)	경복궁서측 (화재경계지구)	돈화문로	윤현궁
위 치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종로구 체부동, 효자동 일원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일대	종로구 견지동, 운니동 일대
면 적(m <sup>2</sup> )	122,200	1,076,302	582,297	137,430	226,134
건축물 현황 (한옥/비한옥)	471동 (158/313)	2,782동 (1,233/1,549)	2,136동 (668/1,468)	715동 (146/569)	468동 (153/315)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은 「소방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으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임.([붙임.1] 참조)
-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주변 위험시설, 건축물의 밀집도, 인구밀도 등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 전통시장의 경우에 총 328개소 중 화재에 취약한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등 8개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한옥밀집지역도 화재취약성에 따라 인사동, 북촌, 서촌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필요는 없으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소방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안 제4조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방설비 및 소방사업 지원(안 제6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방활동설비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소화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함.([붙임.2] 참조)
- 따라서 한옥 내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통칭하여 「소방시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안 제6조의 제목 ‘소방설비 및 소방사업 지원’을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소방설비(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시설’을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조례안 중 인용과정에서 단순 표기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경우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한옥 내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통칭하여 「소방시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는 것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1] 화재경계지구 관련 법규

[붙임.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붙임.1] 화재경계지구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10.>
  - 1. 시장지역
  -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4
----------	-----------

제안일자: 2014년 12월 4일  
제안자: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2’와 제3호 중 ‘제2조의3’은 인용과정에서의 단순 표기오류로, 이를 각각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로 ‘제2조의3’을 ‘제2조제3호’로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필요는 없으며 소방관서에서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주변 위험시설, 건축물의 밀집도, 인구밀도 등의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 소화기는 「소화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한옥 내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통칭하여 「소방시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단순표기 오류인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로 ‘제2조의3’을 ‘제2조제3호’로 변경함.(안 제2조)
- 강행규정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를 임의규정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로 변경함.(안 제5조)
- ‘소방설비’ 및 ‘소방설비시설’를 ‘소방시설’로 변경함.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로 같은 조 안 제3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제3호’로 한다.(안 제2조)

안 제4조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조제목 중 ‘소방설비’를 ‘소방시설’로 같은 조 중 ‘소방설비(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시설의’를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제2조제2호에 -----.</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2조제3호에 -----.</p>
<p>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u>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u></p>	<p>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 <u>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u></p>
<p>제6조(<u>소방설비 및 소방사업 지원</u>)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u>소방설비(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시설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u>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u>) ----- ----- -----<u>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u> ----- ----- -----.</p>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인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